

#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 M.L. and W.W. v. Germany 판례의 분석과 함께 -

이 현 정\*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법학부 비전임 교수, 법학박사

진 형 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법학부 박사후 연구원, 철학박사

## 국문 초록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도래는 의사소통과 표현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GDPR 제 17조에 명시된 잊힐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며,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충돌하는 권리 간의 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온라인에서 오래된 또는 관련 없는 정보의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구글 스페인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선례를 세웠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한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며, 투명성, 책임성, 공공의 알 권리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 권

\* leehyj77@naver.com

\*\* doctorjun71@gmail.com

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잠재적 피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남아, 개인의 디지털 발자국을 통제하기 어렵게 한다. M.L. and W.W. v. Germany 사건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개인이 공적 접근에서 범죄 기록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정보가 한 번 유통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잊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처음 잊힐 권리에 관한 논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비한 법제의 정비로 그 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은 더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주제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잊힐 권리, 유럽인권재판소, M.L. and W.W. v. Germany, 표현의 자유

## 목 차

- I. 서론
- II.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논의
  - 1. 잊힐 권리의 정의와 대표적 판결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
  - 3.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계
- III. 유럽인권재판소의 M.L. and W.W. v. Germany (2018) 판결
  - 1. 사실관계 및 쟁점
  - 2. 판결의 의의
- IV. 결론

### I.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도래는 정보의 전파와 접근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의사소통과 표현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명시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RTBF)<sup>1)</sup>는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GDPR, 제17조). 반면 표현의 자유는 대중의 정보 접근과 언론의 자유 보호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유럽인권

1) 과거에는 ‘잊혀질 권리’라고 번역되었으나, 최근에는 ‘잊힐 권리’로 사용된다. 이는 한국어 문법 규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잊혀질’과 ‘잊힐’의 차이는 문법적으로 ‘잊히다’의 활용 형태에 있다. ‘잊혀지다’는 피동형 접사 ‘-지다’를 사용한 표현으로, 실제로는 잊혀진다는 행위 자체를 더 명확히 드러내지만, 불필요하게 긴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보다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잊히다’는 본래의 피동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잊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잊힐 권리’라 칭한다.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제10조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은 현대의 법적 담론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인터넷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의 신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키웠다. 인터넷에서 이 두 권리의 충돌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이부하, 2022). 왜냐하면 인터넷 정보들의 대부분이 사적 영역에서 생산, 유통,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역할은 공적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인터넷에 유통된 정보는 삭제가 어렵고 거의 영구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표현의 자유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는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유통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전례 없는 연결성과 정보 접근성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통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더 이상 관련성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정보의 원래 맥락이 지나간 후에도 개인의 평판과 사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디지털 발자국의 지속적인 영향을 다룬다. 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사용, 공유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리는 정보 침해, 감시, 무단 처리가 만연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중요성, 도전 과제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CJEU)<sup>2)</sup>

의 여러 중요한 판결은 이 두 권리 사이의 균형을 다루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에 명시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서, GDPR 제17조 제3항에는 삭제할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표현과 정보의 자유, 공중보건 분야의 공익, 또한 연구, 통계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로서 다양한 국제 협약과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반면, 잊힐 권리는 개인에게 디지털 발자국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온라인 정보의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정보의 투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원칙과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De Hert, P., & Papakonstantinou, V., 2012).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은 프라이버시의 본질, 디지털 공공 영역에서 기억의 역할, 그리고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Simitis, S. 2010). 잊힐 권리는 유럽연합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개인이 온라인에 남겨진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 권리는 2014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Google Spain 사건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에 입각한 시민의 사회참여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디어는 대중이 다양한 정보와 관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시장을 촉진한다.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와 같이 다른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 형

2)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유럽인권협약에 명시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유럽 평의회 회원국 전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재판소이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경제 정책, 경쟁, 내부 시장 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EU 법에 초점을 맞추고 EU 회원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EU 재판소로 두 개의 다른 재판소이지만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두 법원 모두 중요한 판결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두 재판소를 모두 언급한다.

량을 통해 기본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이부하, 2017). 일반적인 법체계는 이러한 상충하는 권리 간의 충돌을 중재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McCruden, C. 2008), 이러한 메커니즘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안이 가지는 구체적인 맥락(context), 목적, 비례성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제공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명성, 책임성,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프라이버시권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법적 및 윤리적 심의에서 상황에 민감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은 청구인들이 자신의 범죄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M.L. and W.W. v. Germany*(2018) 판결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맥락과 투명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알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sup>3)</sup> 이 논문에서는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M.L. and W.W. v. Germany* (2018)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포괄적인 규범 분석은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담론에 기여하고,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상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논거로 작용할 것이다.

3)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로는 국회의원의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 접근 요청과 관련하여 공익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임을 판시한 *Tarsasag a Szabadsagjogokert v. Hungary* (2009, application no. 37374/05)와 비정부기구(NGO)가 세르비아 정보 기관의 전자 감시에 관한 정보 접근을 요청한 사안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NGO의 손을 들어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를 받을 권리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한 *Youth Initiative for Human Rights v. Serbia* (2013, application no. 48135/06) 등을 들 수 있다.

## II.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논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초점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잊힐 권리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전체적인 개인정보의 통제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잊힐 권리는 특정 조건에서 공개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GDPR, 제17조)인 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원칙으로 볼 수 있다(Solove, 20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가 필요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권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을 소개한다.

### 1. 잊힐 권리의 정의와 대표적 판결

잊힐 권리(RTBF)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연관이 없거나 과도한 경우에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개념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중요한 판결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 판결은 Google Spain SL과 Google Inc.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세웠으며,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에도 영향을 미쳤다. 잊힐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sup>4)</sup>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불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

4) 해당 가이드라인은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www.edpb.europa.eu/our-work-tools/our-documents/guidelines/guidelines-52019-criteria-right-be-forgotten-search-engines\\_en](https://www.edpb.europa.eu/our-work-tools/our-documents/guidelines/guidelines-52019-criteria-right-be-forgotten-search-engines_en))

제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민정, 2015). 또한, 학술적인 관점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정보사회에서의 기본권 간의 정서의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되며, 이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김송옥, 2015).

잊힐 권리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일종의 삭제 요구권의 확장된 개념이면서 기존의 사실이 변경된 경우 알려진 사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도 본다(조소영, 2012).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설, 새로운 기본권설, 정보프라이버시권설, 잊힐 권리 부정설, 혼합된 기본권설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대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이해된다(이부하, 2017). 그러나 만약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무한정 유통, 공개, 이용 등을 규제할 수 있다면 여타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규범들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될 수 있는 문제를 안게 된다(박경신, 2016). 따라서 모든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잊힐 권리는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 시대에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GDPR, 제16, 17조),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Westin, A. F. 1967).

표현의 자유와 잊힐 권리는 복잡한 역학 관계를 형성한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여 투명성, 책임성, 공적 담론을 뒷받침한다(Hoven, M. 2012). 그러나 동시에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범죄자의 정보가 교정과 재사회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이경렬, 2021), 권리의 보호 법익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공

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잊힐 권리가 사용되는 경우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전력이 있는 개인이나 공인이 자신의 디지털 평판을 바꾸려는 시도는 저널리즘의 자유와 역사적 기록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Rosen, J. 2012).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Google Spain (C-131/12) 사건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조건에서 개인이 검색 엔진 결과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 권리와 대중의 정보 접근권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에 통합되어 잊힐 권리로 법제화되었다.<sup>5)</sup> 이 판결은 잊힐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으며 (Fabbrini, F. and Celeste, E., 2020),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Kulk, S., & Borgesius, F. J. Z. 2018). GDPR 제17조는 개인이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이러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 유럽의 규제 당국은 인터넷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범죄자에게만 국한되었던 과거를 잊는 어려움을 이제는 모든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한 것이다(Rosen, J. 2012).

표현의 자유에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는 개인의 표현 권리뿐만 아니라 대중이 정보를 얻을 권리도 보호한다(ECtHR, Tarsasag a Szabadsagjogokert v. Hungary, App no 37374/05, 2009).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중의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ECtHR, Autronic v Switzerland, App no 12726/87, 199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송, 수신

5) GDPR은 2016년 4월 27일 제정되었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잊힐 권리는 주로 제17조(정보 삭제에 대한 권리, 또는 잊힐 권리)에 명시되어 있다.

하는 방법에도 적용되며, 방법에 대한 제한은 정보를 수신, 공유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뉴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 인터넷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ECtHR, Fredrik Neij and Peter Sunde Kolmisoppi v Sweden App no 40397/12, 2013)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ECtHR, Delfi v. Estonia App no 64569/09, 2015).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동등한 비중을 가지며(ECtHR, Axel Springer AG v Germany App no 39954/08, 2012), 한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위에 있는지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적 판단 외에도 윤리적 고려사항은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프라이버시가 없으면 개인은 지속적인 감시와 잠재적인 조작에 노출되어 자율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Cohen, J.E., 2013). 따라서 개인정보를 소유권의 차원으로만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내 정보를 내 소유물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법적인 보호를 주장한다면 규범적 차원의 논의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진실성, 투명성,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므로(Dworkin, R. 1996), 두 권리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기업, 법률 전문가, 정책 입안자 간의 협력을 통해 사례별로 세심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Solove, D. J. 2013).

또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 과정이 국가가 아닌 인터넷 플랫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된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잊힐 권리는 국가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문재완, 2011).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 잊힐 권리를 통한

정보의 삭제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전면적인 정보인권으로서 잊힐 권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장진숙,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규정의 변화가 기술의 변화를 따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osen, J. 2012).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

현대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통제의 개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따라서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권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자는 개인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을 맞추지만, 후자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룬다. 아래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 2.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및 활용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 판결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일 기본법 제1조(인간의 존엄성)와 제2조(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대한 권리)에 근거한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였다(BVerfG, Volkszählungsurteil, 1983).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통하여 자동화된 정보 처리에 내재된 위험성과 개인이 자신의 정보 공개 및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Hornung & Schnabel, 2009).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도록 자극하고 정보 보호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보 공유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졌다(Hornung, G., & Schnabel, C. 2009).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동시에 개인의 발전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질서와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개인이 사회 환경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지, 심지어 어떤 종류의 정보가 공개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면, 그리고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방에 대한 지식조차 평가할 수 없다면, 자신의 자유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 보호는 민주 입헌 국가의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제약 없이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민주 입헌 국가는 시민의 참여에 의존하며, 그 정당성은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 존중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론장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부여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정보 주체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을 기본법의 일부로 인정해 왔고, 이 권리의 법적 근거는 인간 존엄성 보호(제1조 제1항)와 일반적 개인 자유 보호(제2조 제1항)라는 두 기본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형성한다(Hornung, G., & Schnabel, C. 2009). 일반적 인격권 형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인격권 자체가 부분적으로 인간 존엄성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비록 간접적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정보 보호 사이에는 실제로 연관성이 존재한다(ibid).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이 권리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Floridi, 20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립한 원칙은 정보의 책임 있는 사용을 허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는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권리가 우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은 표준화된 규제 장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olove, 2013). 잊힐 권리는 그 적용 과정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적 담론을 지원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과 종종 충돌한다.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어느 권리가 우선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 정보의 성격, 개인의 사회적 역할, 정보가 게시된 맥락 등과 같은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Rosen, 2012).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는 개인이 동의를 통해 정보를 통제하는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복잡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 수집 관행과 그 복잡성은 종종 개인을 압도하여 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가 부족한 경우 더욱 심화한다(Floridi, 2016, p. 301).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및 규제를 재평가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의 논의는 정보 중심의 세계에서 정보 관리의 미묘

한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로브(Solove)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자기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olove, 2013). 이러한 법적 개혁은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의미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대표적인 장애물 중 하나는 개인과 대규모 정보 중심 주체 간의 권력 불균형이다. 일부 기업들은 광범위한 자원과 첨단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의 통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상업화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 불균형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의 개념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수집된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정보 관행의 불투명성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Kokott & Sobotta, 2013).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한 개입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정보 관행에 대한 투명성 요건 강화, 정보 보호 규제의 강력한 집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 사용 방식에 관하여 실제로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비윤리적인 정보 관행에 대하여 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권리의 교차점은 복잡한 법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권리들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현대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법률을 재평가하며, 개인과 대규모 기업 간의 권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개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최근의 비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와 집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소화된 개인정보 고지, 명확한 동의 절차, 강력한 정보 보호법

집행과 같은 투명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 특히, 건강, 재정 상태,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넘어선 예측을 담은 이른바 “추론정보”(Agrawal, A., Gans, J., Goldfarb, A. 2018)의 등장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빅데이터와의 충돌까지 예견하고 있다.

##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련된 규범적 논의

이하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련된 규범적 논의로서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관점과 니센바움(H. Nissenbaum)의 ‘맥락적 무결성’ 이론을 검토한다.

### (1)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청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솔로브(Solove)는 개인정보 침해가 정보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보다는 피해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Solove, D. J. 2006). 개인이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는 ‘핵심 신상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이혼 후 결혼생활에 대해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들은 내밀한 것들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수치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밀한 정보가 퍼져나갔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Rachels, J. 1975). 프라이버시는 그 핵심에 있는 피해가 정당화될 수 없을 때 프라이버시권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법적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는 누군가를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권은 그러한 정보의

오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분실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신원 도용의 가능성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재정적 손실과 평판 손상 등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권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중요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발전은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주도되며, 이 권리의 타당성은 피해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판사는 공익의 효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사회적 이익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보다 클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공익을 우선 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몇몇 항공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면서 승객 기록을 연방 기관에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한 승객 그룹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Solove, D. J. 2008). 결론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가 정당화될 수 없을 때 발동되며, 이 권리는 개인정보의 오용, 신원 도용, 사적인 대화의 무단 공개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법원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공공의 잠재적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균형을 찾아야 한다.

## (2) 니센바움의 맥락적 무결성<sup>6)</sup> (Contextual Integrity) 이론

니센바움(H. Nissenbaum)의 ‘맥락적 무결성’ 이론은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니센바움은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이고 단일하며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정보 흐름의 적절성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단순히 정보의 노출이나 비밀 유출로 보는 대신, 특정 맥락에서의 정보 흐름의 불일치로 이해하는 것이다(Nissenbaum, H. 2004). 니센바움의 이론은

6) 무결성, 완전성 또는 신뢰성으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무결성으로 칭한다.

두 가지 주요 특징에 기초한다. 첫 번째는 시간이나 장소 등 조건에 독립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 행동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민감한 정보와 비민감한 정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정부와 개인이라는 이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정치적 및 법적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공적-사적 이분법과도 일치한다(ibid, pp. 125-134). 맥락적 무결성의 중심 원칙은 정보 흐름의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행위나 사건, 거래는 장소뿐만 아니라 정치, 관습, 문화적 기대의 맥락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맥락은 교육, 정치, 시장과 같은 넓은 범위나 치과 방문, 가족 결혼식 참석과 같은 세밀한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은 법적 및 정치적 연구에서 유용한 이분법으로 정의되지만, 프라이버시 규범에 대한 직관은 제한된 맥락에 뿌리를 둔다(ibid, pp. 137-138). 사람들은 다양한 영역을 오가며, 각 영역은 역할, 기대 및 행동을 규제하는 자체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 흐름이 특정 규범에 따라 통제되고, 이 맥락에서는 환자의 건강 정보는 의사 외에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 공유의 규범이 의료 환경의 맥락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다.

니센바움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정보의 양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과 맥락의 적절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보 주체는 정보가 관련된 개인을 의미하며, 정보 유형은 특정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정보의 종류를 의미한다. 전송 원칙은 정보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전송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이다. 각 맥락에는 고유한 전송 원칙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정보 주체와 정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의 성적 정보가 교사나 학교 관리자에게만 공유되어야 하는 전송 원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ibid, pp. 145-1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니센바움의 맥락

적 무결성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적절한 맥락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권리는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될지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부적절한 맥락에서 자신의 정보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로서 중요하다. 이 이론을 현실 사례에 적용하면 다양한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정보의 온라인 공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정보 규범에 어긋나지만, 동일한 정보라도 연구 목적으로 익명화되어 사용될 때는 다른 맥락적 규범이 적용되는 것이다(ibid, pp. 148-149).

니센바움의 이론은 프라이버시와 자율성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중시한다.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개인의 자율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자기 신체를 통제할 권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ibid, p.149). 이 이론은 정보의 적절한 사용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각 맥락에서의 적절한 정보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대 정보 관행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 및 기술적 현실의 균형을 맞추려면 법적 보호, 윤리적 원칙, 적극적 설계 전략을 통합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Nissenbaum, 2010). 니센바움의 맥락적 완전성 이론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규범적 틀을 제시한다. 맥락별 정보 규범의 중요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식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및 기술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 처리, 공유되는 시대에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 권리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개인정보 사용 방법을 결정하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권리의 필요성은 정보 유출, 신원 도용, 감시 기술의 만연으로 인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솔로브 교수의 연구는 단순한 비밀 유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그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사회적 관계와 권력 역학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한 그의 분류법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보 수집, 처리 및 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솔로브의 통찰은 다각적인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니센바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해하기 위해 ‘맥락적 무결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흐르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맥락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니센바움의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공유되고 사용되는 맥락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잊힐 권리에 관한 규범적 논의는 솔로브와 니센바움의 통찰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솔로브가 강조하는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피해는 개인이 평판 손상이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오래되거나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할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니센바움의 맥락적 무결성 개념은 특정 맥락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옹호함으로써 잊힐 권리를 지지하고 한 맥락에서 공유된 정보가 다른 맥락으로 부당하게 유출되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솔로브와 니센바움의 관점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강화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회적 역학, 권력관계, 맥락적 무결성이라는 시각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적절한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I. 유럽인권재판소의 M.L. and W.W. v. Germany (2018) 판결

이하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2018년 판결인 M.L. and W.W. v. Germany 판결의 사실관계 및 쟁점, 판결의 의의를 살핀다.

#### 1. 사실관계 및 쟁점

M.L.과 W.W.는 1990년대 초 독일에서 유명 배우 발터 세들마이어(Walter Sedlmayr)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99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M.L.과 W.W.는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는 자신들의 범죄 기록으로 인하여 사회 재통합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 범죄에 관한 기사가 검색되어 사생활과 개인 보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검색 엔진 결과에서 이러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M.L.과 W.W.는 독일 법원에 Google과 다른 미디어 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범죄 기록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여전히 공공의 관심사이며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독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M.L.과 W.W.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M.L.과 W.W.는 자신의 과거 범죄에 관한 기사가 지속해서 공개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른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 기록의 디지털 영속성이 자신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사회 복귀를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은 인터넷에서 오래된 또는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잊힐 권리의 필요성을 다룬다. 언론 단체들은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해당 보도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심각한 범죄와 그 가해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과거 기록에 대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Tambiana Madiega, 2019).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생활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M.L.과 W.W.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대중이 과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중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였고, 사건으로부터의 시간적 경과, 현재 시점에서의 공익성 정도, 범죄에서 개인들의 역할, 그리고 전파된 정보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다.

## 2. 판결의 의의

유럽인권재판소는 독일 법원이 상충하는 이익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찾았다고 결론을 내리며 기사가 계속 게시되는 것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히 심각한 형사 범죄와 관련하여 대중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M.L.과 W.W.는 재심 시도와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공적 관심사에 다시 등장했

기 때문에 익명성을 기대하기는 이미 어려웠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정도, 정보 주체의 유명도, 언론과의 접촉 여부 등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으며 역사 연구와 민주적 토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Dirk Voorhoof, 2018).

이 결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특히 과거의 사건이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경우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였다. M.L.판결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이익형량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례이다. 이 판결은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및 공익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데 내재된 복잡성을 다룬다. 개인은 개인의 재활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자 할 수 있지만, 이는 심각한 범죄와 관련하여 역사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M.L.판결은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와 잊힐 권리의 한계에 관한 법적 논의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역사적 기록 보존이라는 집단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Zuiderveen Borgesius, F. J. 2014), 잊힐 권리와 역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보존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나타낸다.

청구인들은 범죄 기록의 디지털 영속성이 사회 재화와 재통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말소하거나 익명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신원을 통제하고 과거 행위에 대한 대중의 끊임없는 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개념적 토대와도 일치한다(Rosen, J. 2012). 반대로 관련 언론사들은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정보 접근권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한 형사 절차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문제의 기사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정보에 입각한 시민을 위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역사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Barendt, E. 2005)고 하겠다.

M.L.판결은 잊힐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담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 판결은 특히 심각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계와 조건을 보여준다. 잊힐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오래되거나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옹호하지만, 이 사건은 이러한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생활 권리와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다룸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사생활 권리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폭넓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형식적이고 법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을 선호하여, 기술 발전을 포함한 새로운 상황에서 제8조의 보호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살아있는 도구 교리(Living instrument doctrine)”<sup>7)</sup>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조건에 비추어 협약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사생활’이라는 용어는 보다 동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시간이 지나도 관련성과 효과를 유지하도록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Zuiderveen Borgesius, F. J. 2014).

M.L.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잊힐 권리와 정보에 대한 대중의 권리 간의 긴장을 강조하고,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의 이익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공적 담론과 이해에 이바지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판결은 역사적 또는 저널리즘적 가치가

7) 1994년, Dean과 Toohey JJ는 헌법을 창시자들의 죽은 손에 의하여 그 해석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도구(living instrument)’ 또는 ‘살아있는 힘(living force)’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Goldsworthy and Huscroft, 2018, p.201)

중요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잊힐 권리가 공익적 고려 때문에 무시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 IV. 결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M.L.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이익형량 과정을 보여준다. M.L.판결은 특히 역사 및 저널리즘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익적 고려사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함으로써 잊힐 권리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존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지만, 그 실행은 공공의 이익과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균형 잡기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잘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힐 권리에 관한 규범적 논의는 현실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지속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아울러 현상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져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처음 잊힐 권리에 관한 논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비한 법제의 정비로 그 논의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은 오히려 더해간다. 실제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 ■ 참고 문헌

- 김민정 (2015),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성격 및 의의, <언론과 법>, 14권 1호, 219-248.
- 김송옥 (2015),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14권 1호, 249-270.
- 문재완 (2009),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8권 1-2호, 53-85.
- \_\_\_\_\_ (2011),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의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권 2호, 1-37.
- 박경신 (2016), 독일개인정보보호법: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도 잊힐 권리가 적용되는가?, <강원법학>, 49호, 103-137.
- 이경렬 (202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힐 권리, <성균관법학>, 33권 2호, 297-350.
- 이부하 (2017), 인터넷상 잊힐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18권 1호, 287-310.
- \_\_\_\_\_ (2022), 디지털 사회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23권 3호, 139-160.
- 장진숙 (2015),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48호, 167-216.
- 조소영 (2012),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공법연구> 41권 2호, 433-457.
- Agrawal, A., Gans, J., & Goldfarb, A. (2018), *Prediction Machines: The Simpl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rvard Business Press.
- Barendt, E. (2005). *Freedom of Speech*.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J. E. (2013), *What Privacy is For*. Harvard Law Review.
- De Hert, P., & Papakonstantinou, V. (2012). The proposed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placing Directive 95/46/EC: A sound system for the

- protection of individual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8(2), 130–142.
- Dworkin, R. (1996).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Fabbrini, F. & Celeste, E. (2020),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Digital Age: The Challenges of Data Protection Beyond Borders, *German Law Journal*, 21, 55–65 .
- Floridi, L. (2016). *The Fourth Revolution: How the Infosphere is Reshaping Human Re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 C. (1968). Privacy: A moral analysis. *Yale Law Journal*, 77(3), 475–493.
- Goldsworthy, J. & Huscroft, H. G. (2017) Originalism in Australia and Canada: why the divergence? In R. Albert, & D. R. Cameron (Eds.) *Canada in the wor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Canadian constitution* (pp. 183–2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ornung, G., & Schnabel, C. (2009). Data protection in Germany I: The population census decis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5(1), 84–88.
- Hoven, M. (2012). Balancing Privacy and Speech in the Right to Be Forgotten.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Digest*. Retrieve from <https://jolt.law.harvard.edu/digest/balancing-privacy-and-speech-in-the-right-to-be-forgotten>
- Kokott, J., & Sobotta, C. (2013).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n the jurisprudence of the CJEU and the ECtHR.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3(4), 222–228.
- Kulk, S., & Borgesius, F. J. Z. (2018).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Europe*, The Cambridge Handbook of Consumer Privacy.
- Madiega, T., & Nichols, A. M. (2019). *EU right to be forgotten*, Th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McCrudden, C. (2008). Human Dignity and Judicial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4), 655–724.

- Nissenbaum, H. (2004). Privacy as Contextual Integrity, *Washington Law Review*, 79(1), 119–157.
- \_\_\_\_\_. (2010). *Privacy in Context*, Stanford Law Books.
- Rachels, J. (1975). Why privacy is important. *Philosophy & Public Affairs*, 4(4), 323–333.
- Rosen, J. (2012).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nford Law Review Online, 64, Retrieve from <https://www.stanfordlawreview.org/online/privacy-paradox-the-right-to-be-forgotten/>
- Simitis, S. (2010). Privacy—An Endless Debate?, *California Law Review*, 98(6), 1989–2005.
- Solove, D. J. (2006). A Taxonomy of Privac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4(3), 477–564.
- \_\_\_\_\_. (2008). ‘I’ve Got Nothing to Hide’ and Other Misunderstandings of Privacy. *San Diego Law Review*, 44, 745–772.
- \_\_\_\_\_. (2013). Introduction: Privacy self-management and the consent dilemma. *Harvard Law Review*, 126(7), 1880–1903.
- Voorhoof, D. (2018).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L. and W.W. v. Germany,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Council of Europe), URL: <https://merlin.obs.coe.int/article/8329>
- Westin, A. F. (1967).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 Zuiderveen Borgesius, F. J. (2014). *Improving privacy protection in the area of behavioural targeting*. University of Amsterdam.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uide o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Updated on 31 August 2020. URL: <https://www.refworld.org/jurisprudence/caselawcomp/echr/2020/en/123516>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2016).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1983). *Volkszählungsurteil* (Census Ruling).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utronic v Switzerland*, App no 12726/ 87 (Judgment of 22 May 1990).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arsasag a Szabadsagjogokert v. Hungary*, App no 37374/05 (Judgment of 14 April 2009).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xel Springer AG v Germany*, App no 39954/08 (Judgement of 7 February 2012).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redrik Neij and Peter Sunde Kolmisoppi v Sweden*, App no 40397/12 (Judgement of 19 February 201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lfi v. Estonia*, App no 64569/09 (Judgement of 16 June 2015).

European Court of Justice. (2014).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 Mario Costeja Gonzalez*.

■ ABSTRACT

---

## Normative Analysi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 Focusing 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M.L. and  
W.W. v. Germany* -

Lee Hyun Jung

Adjunct Facul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y Erlangen-Nürnberg Germany, Dr. jur.

Jun Hyungjoon

Postdoctoral Researcher, Friedrich-Alexander-University Erlangen-Nürnberg Germany,  
Dr. phil.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revolutionized the way we communicate and express ourselves, and poses new challenges to protecting individual privacy. The right to be forgotten, enshrined in Article 17 of the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ymbolizes the conflict between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giving individuals the right to request that their personal data be removed from online platform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se competing rights in the digital ag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right of individuals to request that their personal data be deleted when it is no longer needed, or when they withdraw their consent. This right aims to mitigate the long-term negative consequences of outdated or irrelevant information online. It came to prominence in 2014 with the Google Spain case, in which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ruled that individuals can request the deletion of their personal data under certain conditions. Freedom of

expression is a cornerstone of democratic societies, ensuring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information. It is protected by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support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However, this right must be balanced against the right to privacy, and public interest must be carefully weighed against the potential harm to individual privacy. The digital age has blurred the lin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making it difficult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while protecting privacy. Information shared online can be permanent, making it difficult to control an individual's digital footprint. The case of *M.L. and W.W. v. German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llustrates this conflict, where individuals attempted to remove their criminal records from public access. The case highlights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privacy rights. As internet intermediaries, search engines and social media platform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nagement of online information, and protecting online privacy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the permanence of online information. Once data is in circulation,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erase it, necessitating legal and ethical discussions about managing digital footprints. Thi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allows individuals to regain control over their personal data. In the digital age, it is essential to bala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Keyword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L. and W.W. v. Germany*, right to privacy,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expression

[ 논문투고일 2024. 6. 23. 논문수정일 2024. 7. 23. 게재확정일 2024. 7. 29. ]